

- 2024년도 제2회 강원도의회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개요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6급)	1명	2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 (정책지원관)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무예정부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임용예정분야별 주요업무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주요업무 내용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수집 조사·분석·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연구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3.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최신 예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7급이상) 18세 이상('06.12.31.이전 출생자)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역·성별은 제한사항 없음.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요건
정 책 지원관 (임기제 6급)	자격증 기준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경력 기준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학위 기준	1. <u>관련분야 석사학위²⁾</u> 를 취득한 사람 2. <u>관련분야 학사학위²⁾</u> 를 취득 후 1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u>관련학과²⁾</u>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1)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법인, 대학(부설연구기관 포함), 연구기관 등에서 행정, 감사, 예산, 정책기획, 도시계획, 도시재생, 법제, 법 제도 연구·조사 및 분석 등 임용분야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경력 *2023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기획재정부) **202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2) 관련분야 학위 범위 - 법학(법학전문대학원 포함)·행정분야(학과), 교육분야(학과), 사회복지분야(학과), 공업분야(학과), 농업분야(학과), 녹지분야(학과), 해양수산분야(학과), 환경분야(학과), 시설분야(학과)와 유사관련 학위 취득자 또는 학과 졸업자	

<공통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산정 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 근무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 기관의 폐업 등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대체(보완)서류 제출
 - * 대체(보완)서류 예시 :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 *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5.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임용예정 직급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지방행정6급)	81,239	54,132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별표 13에 따름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임용예정분야와 실무경력 등의 적합성 및 연관성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 인성검사 결과 분석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층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검사요령 및 기간을 안내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 평가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인성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평가요소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평정성적(총점) 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총점)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4. 3. 11.(월) ~ 3. 13.(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수입증지를 인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 3. 13.(수)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033-249-5752),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합니다.

라. 제출서류 ※ 스테이플러, 제본철, 양면인쇄 등 불가(개별 낱장으로 제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모든 서류 공통)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필수서류의 미비,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 모든 증명서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불인정
-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학위증명서는 3개월)

① 응시원서 1부 * 강원도수입증지(6급, 7,000원)

※ 도청 민원실(별관 1층)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의 경력 및 학위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제출한 사항만을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매 이내 : 자유서식) 1부

⑤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경력만을 인정(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응시자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료는 ‘⑥ 경력(재직)증명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⑧ 연구실적 목록, 논문(또는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증빙자료 1부(해당자만 제출)

- ‘논문 요약서 및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사항만을 목록에 작성
 - ※ 논문 건별로 ‘요약서(A4용지 1매 / 자유서식) 및 논문표지 사본 등 증빙자료’ 등을 연구실적목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논문 책자, 제본철 등 제출 불가)

⑨ 기타 어학성적, 정보화 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등 1부(해당자만 제출)

- ※ 어학능력성적표는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1부

- 석(박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 관련 자료 모두 제출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제출

⑪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⑫ 자격요건점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안내 1부

8. 시험일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3. 18.(월) 예정 / 인성검사,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예정

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정 등 공고 예정

다.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정 등 공고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정 등 공고 예정

※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시험정보) 및 강원도 홈페이지(도정마당-채용정보) 참조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 하며, 불합격자에 한해 원하는 경우 원본 서류는 반환 가능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합격자의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로 함)으로 하며, 평정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대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사.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강원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차.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 (☎033-249-5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채용예정직에 대한 직무기술서

□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근무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선발예정인원
강원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1명

주요업무	○ 조례안(제정,개폐)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 의원의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연구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분석·조사 지원
------	---

필요역량	○ (공통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기획력, 판단력,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 (직렬별 역량) 우선순위 판단능력, 집행부 및 의원과의 협의 시 의사소통 등 협상 능력, 팀워크 지향
------	--

필요지식	○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 ○ 조례 입안절차 및 조례 제·개정문 작성 등 법제 전문지식 ○ 지방자치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	---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채용직급 :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자격증 기준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경력 기준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학위 기준	1. <u>관련분야 석사학위²⁾</u> 를 취득한 사람 2. <u>관련분야 학사학위²⁾</u> 를 취득 후 1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u>관련학과²⁾</u>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u>관련분야 실무경력¹⁾</u> 이 있는 사람

※ 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지원 가능

1)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공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인, 대학(부설연구기관 포함),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자치, 행정, 감사, 예산, 정책기획, 법제, 법 제도 연구·조사 및 분석 등 임용분야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근무경력

2) 관련분야 학위 범위

- 법학(법학전문대학원 포함)·행정분야(학과), 경제분야(학과), 교육분야(학과), 사회복지분야(학과), 공업분야(학과), 농업분야(학과), 녹지분야(학과), 해양수산분야(학과), 환경분야(학과), 시설분야(학과), 지방자치와 유사관련 학위 취득자 또는 학과 졸업자